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(송석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2033

발의연월일: 2021. 8. 12.

발 의 자: 송석준 • 태영호 • 서정숙

정희용 • 윤주경 • 조태용

이종배 · 김성원 · 김석기

유경준 · 정찬민 · 이명수

조명희 · 하영제 · 백종헌

박성민 • 최승재 • 엄태영

김미애 · 추경호 · 이종성

김예지 · 김영식 · 박 진

지성호 · 이만희 · 양금희

서범수 · 서일준 · 강대식

의원(30명)

제안이유

2020년 4월 29일 경기 이천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로 38명 사망, 2021년 6월 17일 이천 덕평 쿠팡물류창고 화재로 소방관 1명이 순직 등 물류창고 화재로 인명피해가 반복되고 있음.

그런데 현행 소방안전관리자제도는 소방안전분야의 전문성이 없는 전기관리자, 가스안전관리자, 광산관리자, 유독물 관리자 등 타 직군의 안전관리자도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화재 시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초기 대응능력 부재가 문제되고 있음. 이에 소방안전관련 전문성이 없는 타 직군의 안전관리자가 소방안 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소방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화재발생의 효율적인 대응을 통해 대규모의 인명 피해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·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또는 광산안전관리 직원을 채용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를 채용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삭제함(안 제29조제3항제6호 삭제).
- 나. 「산업안전보건법」상 안전관리자, 「전기안전관리법」상 전기안 전관리자,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상 안전관리자,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상 안전관리자, 「도시가스사업법」 상 안전관리자, 「위험물 안전관리법」상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할경우 소방안전관리자를 채용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삭제함(안 제30조제2항 삭제)

법률 제 호

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9조제3항제6호를 삭제한다.

제30조제2항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9조(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)	제29조(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)
①・② (생 략)	①・② (현행과 같음)
③ 화약류의 제조 또는 저장이	③
나 광업을 주된 영업분야 등으	
로 하는 자로서 「총포・도검	
•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	
한 법률」 제27조 또는 「광산	
안전법」 제13조에 따라 화약	
류제조보안책임자・화약류관리	
보안책임자 또는 광산안전관리	
직원(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	
하는 사람만 해당한다)을 채용	
하여야 하는 자가 그 중 1명을	
채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	
법률에 따라 그가 채용하여야	
하는 사람 각 1명도 채용한 것	
으로 본다.	<u>.</u>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6.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	<u><삭 제></u>
•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	
법률」 제20조에 따라 특정	
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	
하여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	

7. ~ 9. (생 략)

④·⑤ (생 략)

제30조(중소기업자등에 대한 안 제30조(중소기업자등에 대한 안 전관리자 고용의무의 완화) ① (생 략)

- ②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 | <삭 제> 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률」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인 중소기 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도 채 용한 것으로 본다.
- 1.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7조 에 따라 사업주가 두어야 하 는 안전관리자
- 2. 「전기안전관리법」 제22조 에 따라 전기사업자 및 자가 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전기안전관리자
- 3.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 제 15조에 따라 사업자등과 특 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가 선 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

7. ~ 9. (현행과 같음)

④·⑤ (현행과 같음)

전관리자 고용의무의 완화) ① (혂행과 같음)

- 4.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34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액 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선 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
- 5. 「도시가스사업법」 제29조 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 리자
- 6. 「위험물 안전관리법」 제15 조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 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 물안전관리자

③ • ④ (생 략)

③ • ④ (현행과 같음)